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 어떤 내용인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02) 521-5364.

팩스 02) 584-770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우 137-061

값 1,000원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 어떤 내용인가 -

1993

차 레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7
정부안, 장애인 의무교육 조항 빠져/ 12
장애인교육 현황/ 17
장애인아동의 무상·의무 조기교육을 위한 예산안/ 18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정부 안)/ 20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민주당 안)/ 27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공대위 안)/ 37
성명서·장애인의 의무교육권을 확보하자/ 50
경과보고/ 52
장애인복지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립취지문/ 53
장애인복지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54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김성재(장애인복지률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권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교육에 대한 법안 즉 민주당안과 교육부안(정부안), 공대위안이 보여주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근본적으로 공대위안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 무엇이며 정부안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진다. 따라서 공대위안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정부안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1. 시대적으로 변화된 인식

1) 세계의 변화된 상황(인간의 재발견과 생명가치 회복)

최근의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대립되던 양대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신보수주의의 물결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가 인간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붕괴되었다면 자본주의 역시 인간없는 체제일 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킨다. 따라서 한 인간은 그의 인격이나 인간성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재력, 사회적 지위, 권력에 의해 상품화되고 평가받는다. 이렇게 인간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와 같은 길로 나아갈 것이다. 상품과 생산성만을 위한 인간관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인간없는 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그의 소유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은 인간고유의 가치나 인간성 또는 잠재 능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편견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소외계층으로 못박혀왔다.

다른 한편 현재 전세계적인 관심사는 '환경문제'이다. 계속되는 자연의 파괴로 자연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환경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의 생존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임에 분명한 장애인의 생존 및 권리는 여전히 방치되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의 생존도 보호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간이 인간(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를 고려해볼 때 인간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연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으로서의 평등한 자주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곧 장애인이 평등하고 자주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인식, 태도, 변화로 귀결된다.

2) 국내적 변화(신정부의 민주적 개혁과 고통분담의 원리)

전세계적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한 신정부를 맞이함으로써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신정부는 민주적 개혁과 고통분담의 정책을 통해 새로운 한국을 추구하고 있다.

개혁이란 그동안의 비민주적인 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부정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을 뜻하며 고통분담이란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왔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그간 기득권을 가지고 특혜를 누려왔던 강자가 분담하여 나누는 정의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때 장애인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의하게 차별받고 고통을 당해온 계층이다. 따라서 개혁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삶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이상 과거의 지평에 서지 말고 지금까지 차별받고 불의한 사회의 고통을 전담해온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서 정부, 야당, 공대위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개혁과 고통분담의 기본원리에 입각해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장애인들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장애인의 의무교육 배제가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억지 논리를 펴왔다. 정말 교육부가 이 논리를 확신한다면 이것은 의무교육의 근본정신도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근본 원리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와 야당과 공대위는 함께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도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조기의무교육에 대한 보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대위 법안에서 중요한 교육적 원리는 통합교육의 원리와 교육인권의 원리, 그리고 조기교육의 권리이다.

2. 통합교육의 원리

통합교육은 공대위의 교육철학의 기본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통합교육이란 차별적 의식을 넘어서서 평등한 교육을 하자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며 따라서 통합의 반대말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의 원리는 장애인의 교육에서보다 서구에서는 여성차별과 인종차별 소수민족 차별에 반대해서 출발한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통합교육은 단순히 평등한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장애인에게 당당한 삶의 권리 즉 평등한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흔히들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통합교육을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비장애인사회에 적응해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의 통합교육이 여성의 남성의 세계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성 중심의 잘못된 사회체제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변화시켜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의 세계속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흡수통합 원리가 아닌 것이다. 진정한 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똑같이 서로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 교육부안은 통합교육을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흡수통합적 원리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 제 2조의 2항에서는 통합교육의 개념을 "정상적인 사회적 적용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없는 상호적용의 원리로 통합교육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동법 제 8조 2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급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를 통해 임의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대로 통합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차별을 넘어서서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그러므로 개정안 제8조 2항에서의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통합교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일반학교의 교사들에게 장애인의 권리와 이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주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곧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의무교육이란 그 근본원리가 주권자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 교육을 제공할 정부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가 뒤집어지면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받을 의무만을 지워주는 것이 되어 교육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국가로 전이될 수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강제하는 의무교육은 국가주의 교육으로서, 이것은 독재사회의 교육형태로 전근대적인 가장 나쁜 교육이다.

공대위안은 교육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특수교육의 주체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명명하여 교육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교육의 객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우리사회의 독재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과로 이 표현은 전환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대위안은 법의 제정 목적을 제1조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임무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안은 제1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안에 따르면 교육대상인 장애인은 정부가 제공한 교육환경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옷에다 몸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중심의 사고로써 잘못하면 특수교육기관의 기득권 이익에 봉사하는 법이 된다.

정해진 학교제도, 교육과정, 내용에 적응하도록 하는 장애인교육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교육을 정당화하게 된다.

4. 조기의무교육

장애인 교육에서 조기교육은 생명과 다름 없다. 왜냐하면 장애발견 즉시 교육할 때 교육의 효과와 장애극복의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0세, 즉 장애발견 때부터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현재 교육부의 안은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비의 무상 이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시설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무상교육이라지만 교육받을 권리와 시설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일반 유치원에서도 장애아동을 안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없는 무상교육은 곧 무(無)교육으로 귀결된다.

공대위는 원칙적으로 0세, 장애발견 즉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

육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3살부터 조기의무교육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조기교육은 장애극복과 교육의 실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의 원리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기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이 사회통합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유치원 무상교육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재정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장애인 교육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무교육에서도 제외되어 우리사회의 고통을 전담해온 장애인들이기에 이들의 고통을 이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기의무교육은 꼭 실시되어야 한다.

5. 판별위원회에 관하여

교육부안 제22조(특수교육자문위원회)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특수교육 진단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기관장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는 규정이며 이것은 특수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판별위원회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장애인에게 맞는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일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의로 장애인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공대위가 주장하는 별도의 독립되고 공정한 판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장애인들이 차별당하거나 부당한 판정을 받거나 입학 또는 수학과정에서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된다.

2. 양법안 쟁점사항 비교표

정부안	공대위안
의무·무상교육	
제6조(무상교육) ①특수교육기관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전문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 언급없음.)	제6조(권리교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3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무상교육) 전공과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통합교육	
제2조(정의) 6. "통합교육"이라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교육하거나 일반학교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통합교육)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노력)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 및 현직 연수시 모든 교원들이 특수교육의 소양을 이수하도록 조치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침을 세워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
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	
제10조(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조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통학버스운영비, 기숙사운영비, 교직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공립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하여야

정부안, 장애인 의무교육 조항 빠져

- 교육부가 발표한 최종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쟁점사항 분석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들어가는 말

교육부는 지난 9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장애인교육과 관련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당시 입법예고한 교육부안은 초·중등의 장애어린이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모든 장애아동들이 각자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알맞는 교육기회를 갖도록 합과 아울러 특수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개정취지를 밝힌 것이다. 더구나 국민학교와 중학교과정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권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한 장애인 교육관계자들은 초·중등의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조기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16년간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까닭으로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등 장애인의 완전의무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단어조차 없었으나 입법예고안에는 임의규정이나마 순회교육 등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었다.

이런 입법예고안이 나온 지 두 달여만에 발표된 교육부의 최종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장애인의 교육권을 진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한다.
부모의 참여	
제4조(의견의 진술)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평가하는 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부모 등의 참여)①판별위원회는 판별절차 및 결과를 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판별위원회의 판별에 따른 배치는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별화 교육	
제14조(개별화교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개별화교육 계획)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의 개별화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별화교육 계획은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와 동의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개별화교육 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 기간 및 계획서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순회교육	
제12조(순회교육 등)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순회교육)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에서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사람에게는 인접 지역의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 하여금 가정이나 병원,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진단·평가위원회	
제3조(특수교육대상자)①교육부장관	제 14조부터 21조까지 시·군·구에 독

및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립적인 판별위원회를 두어 장애어린 이를 발견하고 진단·평가하며 학교에 배치를 한다. 이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교장은 거절할 수 없다.

3. 양법안 쟁점사항 분석

위에서 살펴볼 때 교육부안은 장애인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견해는 교육부가 마련한 정부안이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16년간 전혀 손을 대지 못한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제정)을 민의에 밀려 개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정도로 교육부안은 형식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교육의 우선과제인 '의무교육' 부분을 살펴보자.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최종안(이하 정부안)은 "의무교육"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제6조(무상교육)는 "특수교육기관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전문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어린이의 의무교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교육법에는 모든 어린이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교육법 제98조(의무 면제 또는 유예)는 병약, 발육불완전, 폐질 아동은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에 장애어린이의 의무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교육법의 의무교육 규정으로 인해 따로 정부안에 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애어린이의 교육권은 교육법에 명시되었다시피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안은 교육법에 나와 있는 장애어린이의 의무교육에 대한 기준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장애어린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애어린이는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조차 의무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안은 또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순회교육제도(제12조)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어린이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진단·평가하고 취학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특수교육기관장이 가지고 있었다. 이로인해 '국민학교 재수생'을 양산해온 진단·평가위원회에 관한

부분도 모든 조항을 교육부령으로 돌려놓아 법안에서 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동한 무수히 지적되어 온 병폐가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제10조에서 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가능성이 회박해졌으며 부모나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로 인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강력한 의견개진이 어렵다. 정부안은 또 개별화교육에 관해 규정을 했으나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자폐아를 규정했던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이번 최종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자폐아'가 빠졌다.

4. 교육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 갖는 의미

교육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는 장애인교육권에 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해석은 정부 안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그렇고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리고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의 의무교육에 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위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교육법 제 98 조에 관한 아무런 언급없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관한 무상교육만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위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7월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다. '장애인어린이에게 완전 의무교육 실시' 등 국내 각 일간지에 대문짝만한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치 모든 장애어린이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떠들어댄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교육 관계자들과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어린이의 의무교육이 적어도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런데 입법 한달여를 앞둔 지금, 의무교육을 제외시킨 채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교육을 등한시하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또 완전한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순회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앞서 밝혔듯이 임의규정으로(…할 수 있다)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교육에 대한 제대로된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의무교육'이니, '순회교육'이니, '개별화 교육'이니, '부모의 진술기회'니 등등 장애인교육에 꼭 필요한 조항을 내세워놓고 선 결정적인 순간에 임의규정 등 모든 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기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정부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는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교육 현황

(1993. 10. 행정쇄신위원회 보고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1. 장애인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93. 5-17세)

구 분	대상자	출현율
중도장애	45,909	대상아동의 0.46%
경도장애	197,647	대상아동의 1.98%
계	243,556	2.44%

2. 특수학교, 특수학급 현황('93)

구 분	설립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특수학교	국립	3	99	1,019	198
	공립	31	666	6,645	1,161
	사립	72	1,189	13,321	1,810
	계	106	1,954	20,985	3,169
특수학급	공립	2,638	3,321	28,210	3,321
계		2,744	5,275	49,195	6,490

3. 장애인교육 수혜율

(49,195명 ÷ 243,556명) × 100 = 약 20%

장애인의 무상·의무 조기교육을 위한 예산안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조정환(비손조기교육원 원장)

'91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보고한 '1990년도 한국 장애인 실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84,400명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6세 이하의 유아가 15% 정도, 1만 3천여명이 조기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추정된다. 그 중 영아들을 제외하고 3-6세의 정신지체 유아 1만명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관의 설립과 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복지관 등과 사설 조기교육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교사 인건비는 아동 40명을 1개 교육기관의 정원으로(총 기관수 250개) 했을 때 2부제 수업을 하여 한 교사당 아동 6명(오전 3명, 오후 3명)을 교육하게 할 경우 교사 7명과 원장 1명으로 총 8명의 인건비를 특수교사의 수준(10호봉 초임 특수교사의 연봉이 1,140만원 정도임)과 같이 지급할 때 현재 조기교육교사들의 경력을 고려하여 한 교사당 약 1,300만원 정도로 평균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다.

$$(\text{총아동수} \div \text{한기관정원}) \times \text{총교사수} \times \text{평균연봉} = \text{총교사 인건비}$$

$$(10000 \div 40) \times 8 \times 1300\text{만원} = 26,000,000,000$$

약 260억원 정도가 1년 교사 인건비로 지출된다.

셋째, 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운영비는 한 교육기관의 1년 운영비를 산출해 보면 알 수 있다.

교재, 교구 구입비	$400000 \times 12\text{개월} = 4,800,000$
아동 간식비	$300000 \times 12\text{개월} = 3,600,000$
비품 구입비	$200000 \times 12\text{개월} = 2,400,000$
각종 공과금	$200000 \times 12\text{개월} = 2,400,000$
기타 제경비	$200000 \times 12\text{개월} = 2,400,000$
-----	-----
계	15,600,000

그러므로 전체 250개 기관 운영비는 $15,600,000 \times 250 = 3,900,000,000$ 즉 39억원 정도가 든다.

결국 정신지체 조기교육의 의무, 무상교육을 위한 1년 예산은 교사 인건비 260억에 운영비 39억원을 더한 총 299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발견 즉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 장애유아의 상당수는 취학 이전에 이미 유치원 등으로 통합이 되므로(1992.10 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실태조사 추정치) 정신지체 특수학교와 성인 수용시설 등에 들던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합된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생산인력으로 자라나게 되면 장애아동 조기교육에 드는 1년 예산 300여억원의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정부안 -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3. 9.
제출자 : 정 부

- 라. 국·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동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안 제9조제3항).
- 바.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사.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13조).
- 아.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함(안 제14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안이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고른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선진 특수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특수교육지지체계를 확대하는 등 시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충함으로써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진단, 평가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통보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 등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특수교육기관 중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도 이를 무상으로 하고,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6조).

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특수교육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의 내용과 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 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학교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 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3조(특수교육대상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인이 정하는 장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견의 진술)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평가하는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특수교육의 진흥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무상교육등) ① 특수교육기관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7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비감면등)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취학조건등) ① 특수학교의 설치·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둔다.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10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차별의 금지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2조(순회교육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

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교육)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치료교육

제15조(의료진단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 판정의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직업교육

제17조(직업교육여건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통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18조(전공과의 운영) 고등학교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류별로 전공과를 들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특수학교교원

- 제19조(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당시 특수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 교육대상자로 본다.

의안
번호

247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 민주당 안 -

발의년월일 : 1993. 5. 13
발의자 : 박석무의원
홍기훈의원
김원웅의원
장영달의원

제안이유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장애인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교육기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이념과 요구들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선진특수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현행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법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완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

1.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여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특수교육대상자라함은 시각, 청각, 지체, 정서, 언어, 학습장애인 및 기타의 심신장애

인으로 함. (안 제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과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등 제반 시책을 강구토록 함. (안 제4조)
4.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3세부터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함. (안 제5조 및 제6조)
5.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함. (안 제10조)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함. (안 제14조)
7.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 및 교육기관에의 배치 등을 위하여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특수교육판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설립·경영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경영할 수 있음. (안 제23조 및 제24조)
9. 조기교육원에 취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전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함. (안 제29조)
10.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함. (안 제32조 및 제34조)
11. 특수교육기관은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함. (안 제37조 및 제38조)
12. 국가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정·교재 및 교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함. (안 제42조)
13. 이 법의 실시와 동시에 특수교육진흥법은 법률로서 효력을 상실함. (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교과교육과 치료교육, 진로 및 직업 등의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조기교육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병설된 학급을 말한다.
4. “조기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국민학교 취학전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에게 실시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5. “전공과”라 함은 고등학교 과정 졸업 후 직업전문기술의 심화를 위한 1년 이상의 직업전문심화과정을 말한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특수교육판별위원회가 이 법 제17조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별한 사람을 말한다.

1. 시각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정신지체인
4. 지체장애인
5. 자폐·정서장애인
6. 언어장애인
7. 학습장애인

8. 기타의 심신장애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2.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 개선
3. 특수교육담당교원(이하 "특수교원"이라 한다)의 양성과 연수교육 및 그 우대책
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신설, 설비의 확충 정비
5. 특수교육의 교재, 교구 및 보장구의 연구, 개발
6.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한 각급학교의 편의시설 개선
7.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8.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및 졸업 후의 지도
9.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3세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모든 국민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6조(무상교육) 이 법 제 5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법 제 143조에 의한 전공과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7조(통합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침을 세워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

제8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는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강구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8명 이하로 하되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편의의 제공)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그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의 거부, 입학 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지원을 할 경우 시험기간 연장, 시험문제의 구술, 대필 등 입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이 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체육 등 모든 수업과 특별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한다.

③ 특수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교과와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순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에서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사람에게는 인접지역의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 하여금 가정이나 병원,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치료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은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치료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치료교육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교직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를 국·공립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 2장 특수교육 판별위원회

제15조(특수교육판별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기에 정확하게 판별

하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기관에의 배치를 위하여 각급 특수교육 판별 위원회(이하 “판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특수교육판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부에 중앙 판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각 도 및 직할시에 시·도 판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는 시·군(구) 판별위원회를 둔다.

② 판별위원회는 특수교육전문가, 사회사업가, 의사, 법률가, 기타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하되, 세부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특수교육판별위원회의 임무) ① 중앙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진단 및 판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
3. 시·군(구) 판별위원회와 시·도 판별위원회의 지휘 감독

② 시·도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정밀검사 및 재검사
 2.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의 적절성 심의
- ③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진단 및 판별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각급학교, 또는 특수교육기관에의 배치
 3. 부모 상담

제18조(진단·배치청구) ① 판별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나 그 부모, 보호자, 또는 각급 특수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배치에 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제 1항의 진단·배치청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교육기관에의 배치 및 지정) ① 판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치를 위하여 각급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판별위원회로부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각급교육기관의 장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판별기준 및 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판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군·구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급판별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시·군·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급 판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정 여부를 확정시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부모 등의 참여) ① 판별위원회는 판별의 절차 및 결과를 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별위원회의 판별에 따른 배치는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장 특수교육기관

제1절 조기교육원

제23조(목적) 조기교육원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기교육을 통해 심신발달을 도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설립, 경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설립, 경영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25조(설립허가 등) ① 조기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폐쇄명령)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 3장 제1절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지휘 감독) 조기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28조(장학지도) 각 시·도교육감은 당해 조기교육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취원 대상의 연령) ① 조기교육원에 취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제 3조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전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교육원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취원시킬 수 있다.

제30조(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교육감이, 제 2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당해 조기교육원의 경영자가 임면한다.

② 허가를 받아 조기교육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교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의 종별과 자격, 임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기교육원 교직원의 종별과 자격) ① 조기교육원에는 원장 및 교사를 두되 교사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감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조기교육원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원감은 조기특수교육정교사(1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조기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교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2절 특수학교

제32조(특수학교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를 필요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분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통학편의) ① 특수교육기관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숙사나 통학버스를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하는 특수교육기관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보육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특수학급

제34조(목적)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통합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특수학급의 설치) ① 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 145조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학습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36조(특수학급의 종류) ① 특수학급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치되 지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장애의 유형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2.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3. 정신 지체인을 위한 특수학급

4. 자폐, 정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5. 학습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6. 기타의 특수학급

③ 장애의 정도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전일제 특수학급
2. 시간제 특수학급
3. 특별 지도실

제4장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제37조(진로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로교육의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직업교육) ① 고등학교 이상의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은 전문자격을 갖춘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직업교육의 종류와 과정 및 실기교사의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장학금과 학비 감면

제39조(장학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학비 감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제41조(부모교육)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원할때는 가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특수교육 연구원) 국가는 특수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의 연구개발, 각종 교재, 교구 및 진단, 판별도구의 개발, 특수교육원연수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한다.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받게 할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조기교육원을 설립한 자
3. 제 25조에 의한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기관의 장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8조를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 자
2.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위한 지정을 거절한 자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의 실시와 동시에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안 -

제작 : 1993. 3.

제안이유

1. 시대적으로 변화된 인식의 수용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장애인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질적인 이해가 증대되면서 통합교육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기회의 완전한 확보, 발달단계에 따른 조기교육의 중요성, 개인간(interindividual)-개인내(intraindividual) 차이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의 필요성,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 부모 교육의 필요성 등 수많은 이념과 요구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선진 특수교육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법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제안 목적은 크게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권의 완전한 확보, 그리고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현, 기타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계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을 실현하는 데 있다.

2.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사람들은 흔히 통합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접근해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의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서로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통합교육 차원에서의 특수교육은 단순하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물리적인 통합은 국가 사회적으로 전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진정한 통합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에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며, 통합교육은 그러한 태도와 경험을 토대로 장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 확보

한편,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시급히 타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기회는 법률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은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다 더욱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정작 학교가 없어 그 뜻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공부할 기회가 마련되더라도 입학에서의 불이익, 학교 생활에서의 불이익 등 수많은 차별교육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낙도에 사는 몇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는 분교까지 설치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도 장애인의 교육권이 이처럼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편견과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수교육은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

교육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학교는 그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영역을 고려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는 직업교육 외에도 조기부터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그

방면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실기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당면한 요구의 수용

이상에서 밝힌 통합교육의 이념실현과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확보,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는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수용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로써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제안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특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당면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이다.

주요골자

1. 통합교육의 이념

- 1)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명시한다.
- 2) 특수학급의 목적, 설치, 종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 3)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판별 등을 위한 특수교육 판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4)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각급 학교의 불이익 처분 금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5) 조기교육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 확보

- 1) 조기교육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판별 등을 위한 '특수교육 판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3)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4)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으로 한다.
- 5)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 6)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 연령을 0세부터로 한다.
- 7)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한다.

3.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

- 1)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 2)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 3)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4. 기타

- 1)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다.
- 2)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3)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3)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을 규정한다.
- 4) 국립 '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한다.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교과교육과 치료교육, 진로 및 직업 등의 교육을 말한다.
2. "조기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국민학교 취학 전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에게 실시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조기교육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2.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
3.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통합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의 편의시설 개선
4.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조기 발견
5.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취학 및 졸업 후의 지도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함은 "특수교육 판별위원회"가 이 법 제19조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별한 사람을 말한다.

1. 시각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정신지체인
4. 지체장애인

5. 자폐, 정서장애인

6. 언어장애인

7. 학습장애인

8. 기타의 심신장애인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 연령은 0세부터로 한다.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노력)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 및 현직 연수시 모든 교원들이 특수교육의 소양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에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침을 세워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

제6조(권리교육)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모든 국민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7조(무상교육) 이 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법 제143조의 2에 의한 전공과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8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편의의 제공)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그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의 거부, 입학 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지원을 할 경우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의 구술, 대필 등 입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체육 등 모든 수업과 특별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순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에서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사람에게는 인접지역의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 하여금 가정이나 병원,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치료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은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치료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한다.

③ 특수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교과와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교직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를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 판별위원회

제14조(목적)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하고 판별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기관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각급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이하 "판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구성) ① 교육부에 "중앙 판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각 도 및 직할시에 "시·도 판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는 "시·군(구) 판별위원회"를 둔다.

② "판별위원회"는 특수교육전문가, 사회사업가, 의사, 법률가, 심리치료사 기타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하여 세부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무) ① "중앙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진단 및 판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
3. "시·군(구) 판별위원회"와 "시·도 판별위원회"의 지휘 감독

② "시·도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정밀검사 및 재검사

2.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의 적절성 심의

③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견, 진단 및 판별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각급 학교, 또는 특수교육기관에의 배치

3. 부모상담

제17조(진단·배치청구) ① "판별위원회"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그 부모, 보호자, 또는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진단·배치에 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진단·배치청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교육기관에의 배치 및 지정) ① "판별위원회"는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치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판별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판별기준 및 방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판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 판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군(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급 판별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시·군(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급 판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정 여부를 확정시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부모 등의 참여) ① 판별위원회는 판별의 절차 및 결과를 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별위원회의 판별에 따른 배치는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장 특수교육기관

제1절 조기교육원

제22조(목적) 조기교육원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기교육을 통해 심신 발달을 도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전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설립, 경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설립, 경영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24조(설립허가 등) ① 조기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폐쇄 명령)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3장 1절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6조(지휘 감독) 조기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27조(장학지도) 각 시·도 교육감은 당해 조기교육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취원 대상의 연령) ① 조기교육원에 취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교육원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취원시킬 수 있다.

제29조(조기교육원 교직원의 종별과 자격) ① 조기교육원에는 원장 및 교사를 두되 교사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감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조기교육원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원감은 조기특수교육 정교사(1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조기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교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30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당해 조기교육원을 대표한다.

②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및 원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교직원의 임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교육감이, 범 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당해 조기교육원의 경영자가 임면한다.

② 허가를 받아 조기교육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교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복무) 조기교육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특수학교

제33조(목적) 교육법 제143조에 의한다.

제34조(특수학교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를 필요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분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통학편의) ① 특수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숙사나 통학버스를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하는 특수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보육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특수학급

제36조(목적)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통합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특수학급의 설치) ① 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145조에 의한다.

② 전항에 의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학습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38조(특수학급의 종류) ① 특수학급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치되되 지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장애의 유형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2.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3.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수학급
4. 자폐·정서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5. 학습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6. 기타의 특수학급

③ 장애의 정도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전일제특수학급
2. 시간제특수학급
3. 특별지도실

제4장 개별화교육

제39조(목적)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각 개인의 정서, 생활유형, 학습능력, 학습습관, 지능 등에 따라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개별화교육 계획) ①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의 개별화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 계획은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와 동의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 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 기간 및 계획서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개별화교육 계획위원회) ①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의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 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개별화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 개별화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8명 이하로 하되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학생수를 현실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제5장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제43조(진로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로교육의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직업교육) ① 고등학교 이상의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은 전문 자격을 갖춘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직업교육의 종류와 과정 및 실기교사의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장학금과 학비감면 등

제45조(장학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학비 감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제47조(부모교육)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특수교육 연구원) 국가는 특수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조기교육원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계획의 연구개발, 각종 교재, 교구 및 진단, 판별도구의 개발, 특수교육 교원 연수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연구원을 설립한다.

제7장 벌칙

제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교육 받게 할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조기교육원을 설립한 자
3. 제25조에 의한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자
5. 제29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자
6.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면보고를 아니한 자

제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 자
2.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배치를 위한 지정을 거절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에 의한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6조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자
3. 제27조에 의한 장학지도를 받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 교육감이 부과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자

제2조 : 용어의 변경(특수교육권)

제3조 : 시설의 경과조치

제4조 : 이 법의 실시와 동시에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 조기교육교사 자격기준

자격	기준
정교사 (1급)	1. 조기특수교육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조기특수교육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정교사 (2급)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조기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조기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사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조기특수교육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장애인의 의무교육권을 확보하자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 곧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장애인은 그동안 '의무교육'에서조차 제외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해마다 대학입시 문제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음에도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인 법으로 전락해 그동안 장애당사자는 물론 특수교육관계자들의 전면적인 개정요구를 받아왔던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장애발견 즉시 교육할 때 교육의 효과와 장애 극복의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0세, 즉 장애를 발견한 바로 그때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기교육은 장애극복과 교육의 실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통합교육의 원리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15년만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무교육'을 또다시 누락시킴으로써 4백만 장애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교육비의 무상 이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와 '시설'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통합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은 '교육적 특혜'가 아닌 동등한 한 인간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은 그동안 특수교육계에 만연한 불신과 부조리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 공동책임'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장애인들의 완전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교육법 제 98조(의무교육의 면제·유예조항)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교육법에는 초·중등의 모든 어린이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교육법 제 98조로 인해 장애어린이는 사실상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어린이의 의무교육을 위해 교육법 제 98조는 완전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조기교육과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에 포함, 실시되어야 한다.

조기교육은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장애가 발견되는 즉시 그 순간부터 교육혜택을 누릴 때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의 가능성 역시 빨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고액의 장애아 조기교육원이 난립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기교육원의 정비와 함께 의무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어린이의 취학을 위해 진단·평가·배치를 맡을 시·군·구 차원의 판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입학생을 판별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국민학교 재수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장애어린이에 가장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 차원의 판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체된 일반교사가 특수교육기관으로 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자격확보가 일반교사 적체해소의 방편이어서는 안된다.

1993. 10. 15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 1991 12. 공대위 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논의 시작.
- 1992 1. 특수교육전문가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논의
4.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장애인 부모·특수교육교사·특수교육과 재학생·특수교육 전공교수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4. '한국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가톨릭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6.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재활협회에서.
8.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안 및 장애인교육법 제정안 1차 시안 완성
9. 재활협회에서 두차례 워크샵 개최
10. 장애인교육법 제정안 2차 시안 완성
11. 장애인교육법 제정안 3차 시안 완성
1993. 1.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최종 확정
1. 공대위,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설명회' 개최, 재활협회에서.
4.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가짐
5.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주최로 명동에서 가두서명
5. 임시국회 때 민주당에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의원입법 발의
7. 공대위,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시행령·시행규칙 작업 시작
9.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청년연대모임 결성(전국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 자원활동연합회, 수화동아리연합회, 키비탄연합회 등)
9. 올바른 장애인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출범
9. 공대위,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안토론회 개최, 기독교회관에서.
10. 전국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 회원 김명기씨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 돌입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립 취지문

지금 이땅의 4백만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잘못된 인식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정책부재로 의료, 교육, 취업 등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유린 당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해 왔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경험이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0년 법관 임용 거부사태와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교육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땅 장애인복지의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성과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4백만 장애인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요구를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제 장애인의 문제는 더이상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공동의 문제이며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장애인과 장애인 제 단체에서는 현재 한국 장애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해 모든 장애인이 더 이상 편견과 소외에 고통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고문>

김관식(새누리신문사장), 김기창(한국농아복지회회장), 김석원(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회장), 김성수(대한성공회주교, 한국장애인총연맹), 김학목(한국뇌성마비복지회회장), 문병기(한국재활재단이사장), 조일목(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송건호(한겨레신문회장), 송영욱(DPI한국회장), 송월주(경실련공동대표), 이우정(민주당의원, 한국장애인총연맹), 이정일(전남일보사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 이태영(대구대총장), 홍창의교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문)

<자문>

권도용(한신대교수), 김완(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회장), 김호준(부산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활용(이수교회목사), 민군식(삼육재활원원장), 박성구(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지영관(한국맹인복지연합회회장), 박용수(한글문화연구회이사장),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 손봉호(서울대교수), 신정식(녹십자병원원장), 양금순(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유경운(여수애향재활병원원장), 윤석웅(강동사회복지개발원원장), 육병일(한국점자도서관관장), 이철웅(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 전익준(서울정박자복지관장), 정화원(부산장애인연합회회장), 배연창(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전봉운(삼육재활원원장), 채규철(한국장애인총연맹), 한승현(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김정근(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회장), 윤종구(서울대병원소아과교수), 정형식(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회장)

위원장: 김성재(한신대교수·한국장애인총연맹공동대표)

부위원장: 심동섭(한국농아복지회 상임이사)

대변인: 이성재(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상임운영위원회>

부름의전화, 삼육재활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재활재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정신박약자복지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선교단체연합회

<참가단체>

가톨릭의대키비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대 손말사랑회, 남북한장애인걷기운동본부, 단대 키비탄, 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 DPI 한국, 베데스다선교회, 부름의전화, 부산장애인연합수송봉사단, 부산장애인연합회, 부산지체장애인복지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 부산한국장애인고용복지협회, 불교사회복지회, 사랑의친구우리, 사회복지촉진협의회, 삼마회, 서강대손짓사랑회, 서울대손말사랑회,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시설문제연구회, 외대손말사랑회, 원심회, 이대 손지, 이대 키비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대학동문회, 전국자원활동협의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참우리, 충남장애인부모회, 청음회관,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약시재활협회,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 한국장애인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점자도서관, 한신대재활학과학생회, 한양대손말사랑회, 한양대키비탄,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장애인자종합복지관, 서울정신박약자복지관, 한국맹인이료연구회, 경남지체장애인협의회(가나다순)